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3

2025. 9. 12.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7. 9.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5. 7. 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난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원 대상 및 대여기간 확대, 다자녀가정(두 자녀) 연회비를 감면하고, 회비 반환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회원가입 대상 확대 : 안 제6조제2항
 - 대상추가 : 남양주시 소재 어린이집의 장 (기관 교구 대여 기회 확대)
- 회비 반환 기준 재정비 : 안 제9조제2항
 - 회비 운영규정에 따라 반환 → 장난감 및 도서를 1회 이상 대여했을 경우 반환 제한
- 연회비 무료 대상자 확대 : 안 제9조제3항제5호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 ⇒ 두자녀 이상을 둔 가정
- 장난감대여기간 확대 : 안 9조제4항 (대여기간 14일 → 21일)
- 기타 조문 재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본 안건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 회원가입의 대상과 장난감 대여 기간을 확대하고 연회비 감면 대상자를 현행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가정에서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장난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5

2025. 9. 12.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손정자 의원 등 9명
- 나. 회부일자: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탄소중립과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환경교육 시책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기념품, 장소 등 제공
 -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비지급 규정 신설
 -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에게 소요경비 지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조문검토

- 동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물 제공,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기념품장소 등 제공,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과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우리 시 환경교육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66

2025. 9. 12.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박윤옥 의원 등 9명
- 나. 회부일자: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와 함께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공동주택 충전구역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큼에 따라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조문검토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2024년말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총 274만 6,655대로 2023년보다 29.5% 증가하였으며, 전체 자동차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전년 대비 2.2% 증가함.

※ (남양주시) 25년 8월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중 전기자동차 9,510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27,430대로 2024년보다 33% 증가

-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60건으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2배 가량 증가하고 있고, 화재사고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기타 다른 화재보다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

※ (남양주시) 24년~25년 8월현재 화재발생 1건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양주시 실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7

2025. 9. 12.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이경숙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봉사자 운영 및 관리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원관리를 위한 시민봉사자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안 제2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봉사자 제도 운영과 관리위탁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동조 제4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의 관리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위탁의 방식·수탁자 선정기준·위탁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임
- 아울러 시민봉사자 모집 및 운영 규정을 두고,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참여 확대의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됨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768

2025. 9. 12.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손정자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안 제5조, 제6조)
- 참여자 지원, 영양취약계층 추가지원 (안 제7조, 제8조)
-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안 제9조)
-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조문검토

- 동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영양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영양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의안번호
785

2025. 9. 12.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9. 3.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 상 : 남양주시복지재단
- 기 간 : 2026. 1. 1. ~ 2026. 12. 31.
- 출연금액 : 금933,626,000원(금구억삼천삼백육십이만육천원)
- 내 용 : 남양주시복지재단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교부

[출 연 내 역]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비고
계	909,278	933,626	24,348	2025년 대비 2.7% 증액
인 건 비	617,574	655,505	37,931	인건비 인상률(3%) 반영 통상임금 기준변경에 따른증액
운 영 비	202,704	236,121	33,417	업무용시스템(전자결재 등) 구입비 증액
사 업 비	89,000	42,000	△47,000	

○ 주요 증감 사유

- 인건비 : 인건비 인상을 3% 반영, 통상임금 기준(명절휴가비 포함)변경
- 운영비 : 기존시스템 중단에 따른 신규 업무시스템(전자결재, 회계) 구입

4.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 명 칭 : 남양주시복지재단
- 설 립 일 : 2020. 12. 2.
- 소 재 지 :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다산동, 다산행정복지센터 내)
- 조직구성
 - (재 단) 1실 2부 / 11명 (대표이사1, 복지실장1, 직원9)
 - (임 원) 총 12명 [이사 10명(대표이사1, 당연직1 포함), 감사2명]
- 주요사업
 - (조사·연구) 남양주시 복지 수요조사·연구를 통한 맞춤형 복지시책 개발
 - (모금·배분) 공동모금회 연합모금 활성화 및 나눔사업 기획 추진
 - (민·관협력) 민간 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및 복지정책포럼 개최 등

○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비교증감	비고
계		909,278	933,626	24,348	2.7% 증액
① 인건비		617,574	655,505	37,931	
급여		408,770	427,272	18,502	
제수당	정액급식비	18,480	18,480	-	
	가족수당	5,520	6,600	1,080	
	시간외근무수당	46,426	53,086	6,660	
	정근수당가산금	3,620	4,600	980	
	정근수당	7,978	11,506	3,528	
	명절휴가비	28,517	30,036	1,519	
	연가보상비	4,335	4,907	572	
퇴직적립금		45,879	48,616	2,737	
평가급(성과급)		48,049	50,402	2,353	
② 운영비		202,704	236,121	33,417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56,907	94,712	37,805	
	공공운영비	12,719	13,499	780	
	회의비	1,800	1,500	△300	
	시간 외 급식비	6,804	5,832	△972	
	교육훈련비	-	500	500	목→세목 이동
여비		9,240	5,280	△3,960	
업무추진비		12,000	12,000	-	

구분		2025년	2026년	비교증감	비고
직무수행경비 (직급 보조비)		26,940	26,940	-	
교육훈련비		1,500	-	△1,500	목→세목 이동
수선유지비		500	500	-	
관서 업무비	정원가산 업무비	880	880	-	
	부서운영 업무비	2,100	2,100	-	
위탁관리비		6,600	5,976	△624	
연금부담금 등		64,714	66,402	1,688	
③ 사업비		89,000	42,000	△47,000	
정책연구		44,000	-	△44,000	
나눔홍보사업		24,000	24,000	-	
사랑의 온도탑		10,000	10,000	-	
복지시설 컨설팅		7,000	4,000	△3,000	
안심케어		4,000	4,000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안전검토

- 본 안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및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등 교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전임

- 2025년도 출연금은 933,626천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하였고 인상 요인은 인건비 인상률과 업무시스템 구입을 포함한 운영비 증액이 반영된 것임.

□ 종합의견

- 복지재단은 남양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남양주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인 만큼, 출연 동의는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확보 과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다르게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으므로 그 간 출연금에 대한 사항 및 2026년도 재단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6

2025. 9.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9. 3.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주차요금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용
- 관람 운영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긴급 상황 대응, 관람시간 구분, 입장료 시기 및 연령 기준을 명확히 규정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안 제명)
 - (현행)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운영 조례
- 수목원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목재문화체험장, 반딧불이 생태공원, 숲문화센터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
- 용어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9조)

- ‘재료비’ → ‘체험료’로 변경
- 휴원 및 운영 조정 근거 규정 보완(안 제6조, 제7조)
 -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휴원 및 관람 운영 조정 가능 근거 마련
- 관람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안 제7조)
 - 동절기(11월 ~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하절기(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입장료 및 주차요금 조항 정비(안 제8조, 제10조)
 - 입장료의 어린이 및 청소년 연령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장료 부과 시기 특정
 - 기존 주차요금 조항을 삭제하고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적용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본 안건은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고,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적용하였으며, 관람 운영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긴급상황 대응, 관람시간 구분, 입장료 시기 및 연령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운영 효율성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87

2025. 9. 19.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9. 3.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9.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기초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임(재위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19조(재위탁·재계약)에 따라 시의회 동의안 제출

나. 주요내용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위탁 등)
-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제9조(클린넷 및 클린 센터의 운영·관리 및 위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위탁시설 개요

- 소각시설: 52톤/일(열분해용융)
- 음식물자원화시설: 31톤/일(고온혐기성소화)
- 자동클린넷: 집하장 3개소/투입구 1,101개(시행자:250개, 분양자: 851개)

구 분		제1집하장 (중앙집하장)	제2집하장	제3집하장	계
위 치		남양주시 덕송3로 76(별내동)	남양주시 불암로 305(별내동)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102-47(별내동)	-
투 입 구	일반(20L)	75	113	160	348
	일반(50L)	77	102	165	344
	음식물투입구	93	122	194	409
	계	245	337	519	1101

□ 위탁사무 내용

-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반입된 폐기물의 계근 확인 및 기록유지
 -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운전 및 유지보수
 - 본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류 관리
 - 정비 및 보수계획 수립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 기기의 정기적인 점검 및 검사, 분석
 - 과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자문
 - 과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면허유지 및 법적 자격운영요원 확보
 - 과업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과업시설 부지 내 환경정비
-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을 지시하는 사항 등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2026.1.1. ~ 2028.12.31.)
- 총사업비: 11,035,808천원/년
-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신청자 자격요건
 - 최근 5년 이내 처리능력이 18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혼합 소각 포함)을 운영한 실적과 처리능력이 11톤/일 이상의 음식물처리 시설 (음폐수처리시설 포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세부 추진일정(안)
 - 의회 동의 : 2025. 9. 24.(수)
 - 입찰공고 : 2025. 9. 5.(금) ~ 2025. 10. 20.(월) (45일간)
 - 참가등록 : 2025. 10. 20.(월)
 - 제안서 제출일 : 2025. 10. 20.(월)
 - 가격입찰 : 2025. 10. 20.(월)
 - 제안서 평가 :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 가격 개찰일 : 2025. 10. 24.(금)
 - 협상 진행 : 2025. 10. 27.(월) ~ 2025. 10. 31.(금)
 - 최종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2025. 11.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검토의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시설관리 경험이 풍부한자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하여 안정성 제고
경제적 효율성	○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전문성으로 유지·보수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성과평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환경부「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준용)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 센터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민간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시설 유지·보수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총 합 의 견	○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사무는 지역사회 내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사시설 운영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봉규)

-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운영·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위탁운영 과정에서 비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 성과평가 체계의 충실한 운영,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위탁기간이 3년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의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